

# 감사위원회 규정

2022. 02. 16.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 제4조(기본자세)

- ① 감사위원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13.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14.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 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0조, 제45조, 제35조, 제39조, 상법 제414조, 제635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의견표명)

- ① 위원회는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권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회사의 업무 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②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는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보수)

- ①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원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 할 수도 있다.
- ③ 위원회는 독립성에 대한 평가 내용과 내부 및 외부 평가결과를 필요시 주주총회 보고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 할 수도 있다.

## 제2장 위원회 구성

### 제11조(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 시 정한 각각의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해임 및 총원)

- ①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의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③ 감사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회의

### 제14조(개최)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위원회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제17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로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감사위원장 선임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나.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업무·재산 조사
  - 나. 자회사의 조사
  - 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라.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마.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바.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보고서 제출
  - 사.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5. 외부감사인에 관한 사항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 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 마.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6. 관련 규정의 제·개정
7.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제19조(보고수령사항)**

위원회가 보고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보고 수령
2. 평가에 관한 사항
  - 가. 감사위원회 규정의 타당성 평가 결과

- 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내용 평가 결과
- 다.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 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평가 및 보수 조정 보고
- 마. 외부감사인(감사보고서 제출 후) 감사계획 준수 평가 결과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외부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
  - 나. 일상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
  - 다.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운영평가 계획 및 필요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결과 보고
  - 라. 내부신고제도 운영현황 및 접수 건수의 처리결과 보고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조사 및 결과 보고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결과 보고
- 4. 보고수령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수령
  - 나.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보고 수령
  - 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마.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20조(의사록)**

-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중요한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감사위원 별로 기록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의사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부설기구**

**제21조(감사부설기구)**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이하 '내부감사부서'라 한다)를 둔다.
- ②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감사인력의 행동규범)**

내부감사인력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1.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원회와의 연계)

- ① 내부감사부서는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위원회의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내부감사부서는 위원회에 특정 사항의 조사를 건의 할 수도 있다.
- ③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 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장 감사의 구분 방법

### 제24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 ① 위원회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 과정을 의미한다.
- ③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④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⑤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⑥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제25조(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반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26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① 위원회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대표이사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의 대응 상황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필요시 조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장 감사의 실시

### 제27조(감사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지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감사의 실시)

-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 거래기록의 신뢰성
  -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 5. 회계방침의 계속성
  -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제29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 제7장 외부감사인

### 제32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감사인 선임)**

-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회사가 공지 또는 공고한 경우 보고를 갈음 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⑦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외부감사인 변경)**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임하여야 하며, 해임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1. 외부감사인의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외부감사인의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3. 외부감사인의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외부감사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6.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8.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36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상황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8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37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제28조의 검토 및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7.)**

이 규정은 2008. 7.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규정은 2008.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5.)**

이 규정은 2016.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이 규정은 2018. 5.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7.)**

이 규정은 2020. 5.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6.)**

이 규정은 2022. 2. 16.부터 시행한다.